

속초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5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5. 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 안 사 유

-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여건변화를 수용하고, 지방공기업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조항을 상의 법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 주 요 골 자

- 수도사업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조항 개정 (안 제1조 참조)

3. 참 고 사 항

- 강원 법무 02124 ~ 98 ('93.3.24) 호로 정비안 시달 ——— 별 첨
- 시정조정위원회 부의 ————— '93. 4. 29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

속초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'지방공기업법(이하 '법' 이라 한다)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' 를 ' 지방공기업법 (이하 '법' 이라 한다)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' 로 한다.

제15조제1호중 '유용할 다른 예산이' 를 '전용할 예산이'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
제1조(수도사업의 설치) 이 조례는 주민에게 유용할 생활용수 확보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3조(수도사업의 설치)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지방공기업법 (이하 "법" 이라한다)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- - - - - - - - - -
제15조(예산의 탄력규정)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행한다. 1.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㉠ ~ ㉡ (생 략)	제15조 (예산의 탄력규정)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1. - - - - - - - 전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㉠ ~ ㉡ (현행과 같음)